|  |  |  |
| --- | --- | --- |
| **질검총국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 반포와 관련한 공고**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2013년 제 93호)  사회적인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 신용관리 규범화, 기업 신용의식 강화,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와 신용체계 구축 관련 국무원 요구사항에 기반하여 질검총국은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을 제정 및 발표하고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  질검총국  2013년 7월 16일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사회적인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 규범화, 기업 신용의식 강화,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출입국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언급하는 신용관리는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진행하는 기록, 처리, 사용 및 공개 등 관리업무를 가리킨다.  **제3조**  기업신용정보에는 기업 기본정보, 기업 준법정보, 기업 품질관리능력 정보, 제품품질정보, 검사검역 감독정보, 기업신용에 대한 사회평가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  （1）기업 기본정보에는 기업명칭, 기업코드, 법정대표, 주소, 비안/등록번호 등 정보가 포함된다.  （2）기업 준법정보에는 기업의 검사검역 관련 법률법규에 대한 준수 및 관련 위법, 규정위반 등 상황이 포함된다.  （3）기업 품질관리능력 정보에는 기업품질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상황이 포함된다.  （4）제품품질정보에는 기업제품 검사검역 합격률, 해외통보, 반송, 리콜, 손해배상 등 상황이 포함된다.  （5）검사검역 감독정보에는 검사검역 관련 관리규정 준수, 기술규범 및 표준에 대한 이행 등 상황이 포함된다.  （6）기업신용에 대한 사회적 평가정보에는 정부관리부문의 상황 통보, 언론 매체 보도, 사회 공중의 신고 등 상황이 포함된다.  **제4조**  본 방법은 출입국 검사검역기구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감독관리를 진행하는 대상에 적용되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1）수출기업, 수입기업（예를 들면 수입식품 해외수출기업, 대리상 및 국내수입기업, 수출식품생산기업 및 수출기업, 수입화장품 국내수취인, 수출화장품 생산기업 및 송화인 등）  （2）검역신고 대행기업, 출입국 택배서비스 운영기업, 검역처리기구  （3）항구 식품생산기업, 검사검역 수행 장소、검사평가기구  （4）기타 신용관리가 필요한 검사검역감독 관리대상.  **제5조**  국가질량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질검총국이라 함）은 전국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국가질검총국이 각 지역에 설치한 출입국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는 관할 지역 내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업무의 실행 및 관리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6조**  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관리는 준법수행, 객관공정, 통일표준, 과학분류 및 동태관리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7조**  검사검역기구는 통일적인 신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용관리 플랫폼을 통해 기업신용정보를 기록, 처리, 사용, 공개하며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데이터는 기업의 품질신용서류로 관리된다.  **제8조**  신용정보 수집내용과 신용등급 평가규칙은 국가질검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제정 및 공포한다.  **제2장 신용정보수집**  **제9조** 신용정보수집은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신용정보를 기록하는 과정을 가리킨다.  **제10조** 본 방법 제3조 제(1)항 정보는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이 비안/등록 수속을 진행할 때 수집해야 한다. 제(2)~(5)항 정보는 검사검역기구가 신용정보 수집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한다. 제(6)항 정보는 검사검역기구가 지방정부, 관련부서 혹은 언론매체 보도 확인, 사회공중의 신고를 접수 후 신용정보 수집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한다.  **제11조**  기업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기업은 검사검역기구에 정보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기업의 기타 정보가 변경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정보 변경 후 15근무일 내에 심사허가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3장 신용등급평가**  **제1절 일반규정**  **제12조** 신용등급평가는 검사검역기구가 등록된 기업신용정보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그에 해당하는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을 뜻한다.  **제13조** 기업신용등급은 AA, A, B, C, D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AA급 기업：신용리스크가 극히 작다.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기업신용을 매우 중요시하며 약속이행에 엄격하고 훌륭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었으며 제품/서비스 품질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 책임감과 신용시범효과가 뛰어난 기업  A급 기업：신용리스크가 아주 작다.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약속이행에 엄격하며 양호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제품/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인 기업  B급 기업：신용리스크가 비교적 작다.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약속이행 수준이 비교적 훌륭하며, 양호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제품/서비스 품질이 안정적인 기업  C급 기업：신용리스크가 비교적 크다. 일정한 제품 혹은 서비스 품질보장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약속이행 능력이 일반 수준이고 제품/서비스 품질이 불안정하거나 위법/규정위반 행위가 존재하나 심각한 위험과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은 기업  D급 기업：신용리스크가 아주 크다. 엄중한 위법/규정위반 행위가 있거나 기업의 제품 품질로 인해 사회, 소비자, 수출입 무역에 심각한 위험과 손실을 발생시킨 기업.  **제2절 A,B,C,D등급의 평가**  **제14조**  A, B, C, D 등급의 평가는 통상적으로 1년 주기로 수행한다. 신용관리업무의 수요에 따라 검사검역기구는 기업유형, 제품유형 등 속성에 근거하여 별도로 평가 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는 매년 10월에 그 해 평가주기에 해당하는 기업신용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동일 기업이 규정상 다수 평가주기에 해당되는 경우, 최단 평가주기를 기준으로 신용평가에 참가해야 한다.  아래과 같은 경우에는 본 주기의 평가에 참가하지 않는다.  （1）신용관리 범위에 포함된지 한개 평가주기에 미달하는 경우  （2）금번 평가주기 내에 해당하는 검사검역 업무가 없는 경우.  **제15조**  A, B, C, D등급의 평가는 신용점수 및 신용등급 평가규칙에 근거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신용점수는 기업의 초기 신용점수에서 신용정보 기록점수를 차감한 점수이다. 초기 신용점수는 기업이 신용등급 평가주기 시작점에 받은 점수로서 100점으로 정한다.  **제16조**  신용점수가 89점 이상 및 신용등급 평가규칙(A급)에 부합되는 경우, A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7조** 신용점수가 77점 이상, 89점 미만인 경우, B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점수가 89점 이상이나 신용등급 평가규칙(A급)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B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8조**  신용점수가 65점 이상, 77점 미만인 경우, C등급으로 평가한다.  **제19조**  신용점수가 65점 미만인 경우, D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등급 평가규칙(D등급)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직접 D등급으로 평가한다.  **제3절 AA등급의 평가**  **제20조**  AA급 신용기업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현재 신용등급이 A급이고 A급관리를 적용한지 1년 이상인 경우.  （2）검사검역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 및 협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수출입 화물 품질 및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3년간 지속적으로 품질 안전 문제/품질 클레임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3）전년도 검역신고 오차률이 1% 미만인 경우.  （4）상무, 인민은행, 세관, 세무, 공상행정, 외환 등 관련 부서에서 1년간 신용불량, 위법 혹은 규정위반 사례가 없는 경우.  **제21조**  AA급 기업에 대한 평가는 기업에서 신청하고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 기구에서 신청을 접수한 후 직속 검사검역국에서 심사하고 국가질검총국에서 심사비준 및 통일적으로 대외에 공포한다.  **제22조**  AA급 기업은 본 방법 제14조 규정에 근거하여 주기적인 평가에 참가하며, 아래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금번 평가주기 내 제품, 서비스 품질 상황  （2）금번 평가주기 내 기업 경영관리 상황 보고.  주기적인 평가 과정 중 기업이 AA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방법 제3장 제2절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일상적인 감독 과정 중 기업이 AA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본 방법 제5장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더 이상 AA급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직속 검사검역국은 즉시 관련 자격을 취소하고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며, 국가질검총국은 정기적으로 AA급 기업 리스트를 업데이트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사용과 공개**  **제23조**  검사검역기구는 “신용을 지키면 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을 잃으면 징계를 하는” 원칙에 따라 기업신용등급을 검사검역 관리업무의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신용등급을 가진 기업에 대응하는 검사검역 감독조치를 실시한다.  （1）AA급 기업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A급 기업 장려정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출입화물의 검역신고, 확인검사, 통과수속의 우선권을 제공하며, 검사검역 우대정책의 우선적용 권리를 제공한다.  （2）A급 기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검사검역 장려정책을 제공하며, 우선적으로 일류관리, 그린채널, 직접통과 등 검사검역조치를 적용한다.  （3）B급 기업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일상적인 감독, 검역신고, 검사검역, 통과 등 절차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장려조치를 적용한다.  （4）C급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감독, 검역신고, 통과 등 절차에서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비교적 엄격한 관리조치를 적용한다.  （5）D급 기업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제한적인 관리조치를 적용하며, 관련 법률, 법규, 규정, 규범문서 내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기 취득한 자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제24조**  검사검역기구는 다양한 신용등급에 대해 실제 관리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감독조치를 제정 및 보완해야 한다.  **제25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검사검역기구는 업무실행 과정 중 형성된 기업신용정보를 발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검사검역기구는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기업신용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아래의 정보는 대외에 발표해서는 안된다.  （1）국가비밀, 상업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정보.  （2）정보의 소스가 기타 행정기구, 사법/중재기구이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  （3）법률, 법규 및 규정 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  검사검역기구는 신용정보 발표 관련 비밀심사제도 및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필요한 정보보안 조치를 통해 정보보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검사검역기구는 사회적인 신용체계 구축 필요성에 근거하여, 지방정부, 상무, 인민은행, 세관, 세무, 공상, 외환 등 부서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제5장 동태관리**  **제1절 일반규정**  **제27조**  동태관리는 평가주기 내 검사검역기구가 기업의 신용불량 행위에 대해 취하는 적시적인 관리조치를 뜻한다.  동태관리에는 감시규제, 즉시등급강등,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블랙리스트) 에 추가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제28조**  “감시규제”는 검사검역기구가 한개 평가주기 내 신용불량 누계점수가 12점 이상이나, 즉시등급강등 수준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감독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감시규제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하로 정한다. 검사검역기구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감시규제 기한을 정할수 있다. 기업이 감시규제 기간 내에 신용불량을 재차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 기간완료 후 감시규제는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제29조** “즉시등급강등”은 검사검역기구가 한개 평가주기 내 신용불량 누계점수 가 24점 이상이나, 엄중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추가할 상황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평가주기 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즉시등급강등된 기업은 동시에 감시규제 조치가 적용된다.  **제30조**  “엄중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추가”는 검사검역기구가 한개 평가주기 내 위법 및 규정위반으로 인해 행정처벌 누계점수가 36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에 공포 및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뜻한다.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직접 신용등급 D급으로 강등시키고 동시에 감시규제 조치를 적용한다.  **제31조**  검사검역기구는 동태관리 대상이 되는 기업에 제한적인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절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 관리**  **제32조**  검사검역기구는 본 방법 제30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엄중한 신용불량기업을 심사 인정한다.  （1）각 지방 검사검역기구는 관할 지역 내 기업의 위법, 규정위반 사실의 수집을 책임진다.  （2）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적용 대상이 된 기업은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며, 직속 검사검역국에 보고하기 전 최소 20일 전에 서면으로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3）기업은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통지를 받은 후 10일 내에 통지를 발송한 검사검역기구에 서면 해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기업 소재지 검사검역기구는 해당 기업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심사하고 해명자료를 접수한 후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해당 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5）각 직속 검사검역국은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 적용 대상이 된 기업을 심사하고 매달 10일 전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며, 국가질검총국에서 비준 및 대외적으로 공포한다.  **제33조**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시정하고 법적인 요구사항에 부합될 경우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서 삭제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가 신청을 접수한 시점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기업이 위법 및 규정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기업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서 확인하고 직속 검사검역국 심사를 거쳐 국가질검총국에 보고하여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서 삭제 가능하다. 엄중한 신용불량 기업리스트에 오른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34조**  기업이 속임수를 쓰거나, 신용정보를 위조하여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본 방법 제5장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35조**  검사검역기구 내 직원의 직무상 과실, 독직,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부정행위, 직권남용 등 행위로 인해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법에 근거하여 행정적 책임을 묻는다.  **제36조**  기업이 자신에게 적용된 신용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변경 혹은 취소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정보가 오류임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검사검역기구는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37조**  본 방법에서 “이상”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고, “이하”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제38조**  본 방법은 국가질검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출입국 검사검역 기업신용 관리 업무규범(시행)>(국질검통한(2009)118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质检总局关于发布《出入境检验检疫**  **企业信用管理办法》的公告**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2013年第93号）  为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规范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增强企业诚信意识，促进对外贸易健康发展，根据出入境检验检疫相关法律法规和国务院关于加强诚信体系建设的有关要求，质检总局制定了《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办法》，现予发布（见附件），自2014年1月1日起执行。  附件：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办法  质检总局  2013年7月16日  **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办法**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推进社会信用体系建设，规范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增强企业诚信意识，促进对外贸易健康发展，根据出入境检验检疫相关法律法规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所称信用管理是指出入境检验检疫机构对企业的信用信息开展的记录、处理、使用和公开等活动。  **第三条** 企业信用信息包括企业基本信息、企业守法信息、企业质量管理能力信息、产品质量信息、检验检疫监管信息、社会对企业信用评价信息以及其他相关信息。  （一）企业基本信息包括企业名称、组织机构代码、法定代表人、地址、备案/注册登记号等信息。  （二）企业守法信息包括企业遵守检验检疫法律法规及相关违法、违规等情况。  （三）企业质量管理能力信息包括企业质量管理体系的建立及运行等情况。  （四）产品质量信息包括企业产品检验检疫合格率、国外通报、退运、召回、索赔等情况。  （五）检验检疫监管信息包括企业遵守检验检疫相关管理规定、执行技术规范和标准等情况。  （六）社会对企业信用评价信息包括政府管理部门情况通报、媒体报道及社会公众举报投诉等情况。  **第四条** 本办法适用于出入境检验检疫机构依法实施监督管理的对象，包括：  （一）出口企业、进口企业（如进口食品境外出口商、代理商及境内进口商、出口食品生产企业及出口商、进口化妆品境内收货人、出口化妆品生产企业及发货人等）；  （二）代理报检企业、出入境快件运营企业、检疫处理单位；  （三）口岸食品生产经营单位、监管场库、检验鉴定机构；  （四）其他需实施信用管理的检验检疫监督管理对象。  **第五条**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以下简称国家质检总局）主管全国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工作。国家质检总局设在各地的出入境检验检疫机构（以下简称检验检疫机构）负责所辖地区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工作的组织实施及管理工作。  **第六条** 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遵循依法实施、客观公正、统一标准、科学分类、动态管理的原则。  **第七条** 检验检疫机构建立统一的信用管理平台，通过信用管理平台对企业信用信息进行记录、处理、使用和公开形成的数据，共同构成企业的质量信用档案。  **第八条** 信用信息采集条目和信用等级评定规则由国家质检总局统一制定并对外公布。  **第二章 信用信息采集**  **第九条** 信用信息采集是指检验检疫机构对企业信用信息进行记录的过程。  **第十条** 本办法第三条第（一）项信息由检验检疫机构在企业办理备案/注册登记手续时采集；第（二）至（五）项信息由检验检疫机构依照信用信息采集条目的规定采集；第（六）项信息由检验检疫机构征询地方政府、相关部门或核实媒体报道、社会公众举报投诉后，依照信用信息采集条目的规定采集。  **第十一条** 企业基本信息发生变化的，企业应当向检验检疫机构申请变更。企业其他信用信息发生变化的，检验检疫机构应当在变化后的15个工作日内，将经过审核批准的信息予以更新。  **第三章 信用等级评定**  **第一节 一般规定**  **第十二条** 信用等级评定是指检验检疫机构对记录的企业信用信息进行汇总审核并赋予企业相应信用等级的过程。  **第十三条** 企业信用等级分为AA、A、B、C、D五级。  AA级企业：信用风险极小。严格遵守法律法规，高度重视企业信用，严格履行承诺，具有健全的质量管理体系，产品或服务质量长期稳定，具有较强的社会责任感和信用示范引领作用。  A级企业：信用风险很小。遵守法律法规，重视企业信用管理工作，严格履行承诺，具有较健全的质量管理体系，产品或服务质量稳定。  B级企业：信用风险较小。遵守法律法规，较好履行承诺，具有较健全的质量管理体系，产品或服务质量基本稳定。  C级企业：信用风险较大。有一定的产品或服务质量保证能力，履行承诺能力一般，产品或服务质量不稳定或者有违法违规行为，但尚未造成重大危害或损失。  D级企业：信用风险很大。存在严重违法违规行为，或者因企业产品质量给社会、消费者及进出口贸易造成重大危害和损失。  **第二节 A、B、C、D级的评定**  **第十四条** A、B、C、D级的评定，一般以一年为一个评定周期。因信用管理工作的需要，检验检疫机构也可按照企业类型、产品类型等属性对企业另行设置评定周期。  检验检疫机构应在每年的10月份完成企业当年度评定周期的信用评定。同一企业适用多个评定周期的，按照最短的评定周期参加信用评定。  有下列情况的，不参加本周期的评定：  （一）纳入信用管理的时间不足一个评定周期的；  （二）本评定周期内无检验检疫相关业务的。  **第十五条** A、B、C、D级的评定根据信用分值和信用等级评定规则综合评定。  信用分值是企业初始信用分值减去信用信息记分所得的分值。初始信用分值是企业在信用等级评定周期开始时的分值，统一为100分。  **第十六条** 信用分值在89分以上，且符合信用等级评定规则（A级）的，评为A级。  **第十七条** 信用分值在77分以上、89分以下的，评为B级。  信用分值在89分以上，但不符合信用等级评定规则（A级）的，评为B级。  **第十八条** 信用分值在65分以上、77分以下的，评为C级。  **第十九条** 信用分值在65分以下的，评为D级。  存在信用等级评定规则（D级）规定情形的，直接评为D级。  **第三节 AA级的评定**  **第二十条** 信用AA级企业应当符合以下条件：  （一）当前信用等级为A级，且适用A级管理1年以上；  （二）积极支持配合检验检疫工作，进出口货物质量或服务长期稳定，连续3年内未发生过质量安全问题、质量索赔和争议；  （三）上一年度报检差错率1%以下；  （四）在商务、人民银行、海关、税务、工商、外汇等相关部门1年内没有失信或违法违规记录。  **第二十一条** AA级企业的评定，由企业提出申请，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受理，直属检验检疫局审核，国家质检总局核准并统一对外公布。  **第二十二条** AA级企业按照本办法第十四条的规定参加周期评定，并按以下规定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提交材料：  （一）本评定周期内的产品、服务质量情况；  （二）本评定周期内企业经营管理状况报告。  在周期评定中发现企业不再符合AA级条件的，按照本办法第三章第二节的规定管理。对在日常监管中发现企业不再符合AA级条件的，按照本办法第五章的规定管理。对不再符合AA级条件的企业，直属检验检疫局应即时取消相应资质并报国家质检总局，国家质检总局定期更新AA级企业名单。  **第四章 信用信息的使用和公开**  **第二十三条** 检验检疫机构按“守信便利，失信惩戒”的原则，将企业信用等级作为开展检验检疫监督管理工作的基础，对不同信用等级的企业分别实施相应的检验检疫监管措施。  （一）对AA级企业大力支持，在享受A级企业鼓励政策的基础上，可优先办理进出口货物报检、查验和放行手续；优先安排办理预约报检手续；优先办理备案、注册等手续；优先安排检验检疫优惠政策的先行先试。  （二）对A级企业积极鼓励，给予享受检验检疫鼓励政策，优先推荐实施一类管理、绿色通道、直通放行等检验检疫措施。  （三）对B级企业积极引导，在日常监管、报检、检验检疫、放行等环节可结合相关规定实施相应的鼓励措施。  （四）对C级企业加强监管，在日常监管、报检、检验检疫、放行等环节可结合相关规定实施较严格的管理措施。  （五）对D级企业重点监管，实行限制性管理措施，依据相关法律、法规、规章、规范性文件的规定重新评定企业已取得的相关资质。  **第二十四条** 检验检疫机构可针对不同的信用等级制定和完善符合实际管理需要的监管措施。  **第二十五条** 除法律法规另有规定外，检验检疫机构可以公布履职过程形成的企业信用信息。检验检疫机构公布企业信用信息应符合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以下信息不得向社会公布和披露：  （一）涉及国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的信息；  （二）来源于其他行政机关、司法机关和仲裁机构，且还未对社会公开的信息；  （三）法律、法规和规章明确规定不得公开的信息。  检验检疫机构应当建立信用信息发布的保密审查机制和管理制度，采取必要的信息安全措施，保障信息安全。  **第二十六条** 检验检疫机构可根据社会信用体系建设的需要，与地方政府以及商务、人民银行、海关、税务、工商、外汇等部门建立合作机制。  **第五章 动态管理**  **第一节 一般规定**  **第二十七条** 动态管理是指在评定周期内，检验检疫机构对企业的失信行为采取的即时管理措施。  动态管理的措施包括布控、即时降级和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黑名单）等。  **第二十八条** “布控”指检验检疫机构对在一个评定周期内失信计分累计12分以上，但尚未达到即时降级程度的企业，采取加严监管的措施。  布控的期限应不少于30天、不多于90天。检验检疫机构可以根据情况设定具体的布控期限。企业在布控期限内未再次发生失信行为的，期满后布控措施自动取消，否则顺延。  **第二十九条** “即时降级”指检验检疫机构对在一个评定周期内失信计分累计24分以上，但尚未达到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的企业，根据设定规则在评定周期内予以信用等级调整并加严监管的措施。  被即时降级的企业应同时采取布控措施。  **第三十条** “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指检验检疫机构对在一个评定周期内因严重违法违规行为受行政处罚计分累计36分以上的企业，采取向社会公布并加严监管的措施。  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的企业，直接降为信用D级，同时采取布控措施。  **第三十一条** 检验检疫机构应当对实施动态管理的企业实施限制性的管理措施。  **第二节 严重失信企业的管理**  **第三十二条** 检验检疫机构对符合本办法第三十条规定的企业，按照以下程序进行严重失信企业的审核认定：  （一）各地检验检疫机构负责对辖区内企业违法违规事实材料的收集。  （二）对拟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的企业，由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报直属检验检疫局审核，上报直属检验检疫局前，应至少提前20日书面告知当事企业。  （三）企业如有异议，自接到书面告知材料之日起10日内，向告知的检验检疫机构提交书面申辩材料。  （四）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对申辩材料进行评议，自受理申辩材料之日起10日内将评议意见告知企业。  （五）各直属检验检疫局对拟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的企业进行审核，并于每月10日前上报国家质检总局，由国家质检总局核准并对外公布。  **第三十三条** 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的企业，依法整改并符合法定要求后，可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申请从严重失信企业名单中删除。自检验检疫机构受理申请之日起，企业在6个月内未发生违法违规行为的，由企业所在地检验检疫机构确认、经直属检验检疫局审核后报国家质检总局，将其从严重失信企业名单中删除，但其列入严重失信企业名单的记录将永久保存。  **第六章 监督管理**  **第三十四条** 企业弄虚作假、伪造信用信息，影响信用等级评定结果的，按照本办法第五章的有关规定处理。  **第三十五条** 检验检疫机构工作人员因失职渎职、徇私舞弊、滥用职权等行为，影响企业信用等级评定结果的，依法追究行政责任。  **第三十六条** 企业认为其信用信息不准确的，可以向所在地检验检疫机构提出变更或撤销的申请。对信息确有错误的，相关检验检疫机构应当及时予以更正。  **第七章 附 则**  **第三十七条** 本办法所称“以上”包含本数，“以下”不含本数。  **第三十八条** 本办法由国家质检总局负责解释。  **第三十九条** 本办法自2014年1月1日起施行。《出入境检验检疫企业信用管理工作规范（试行）》（国质检通函〔2009〕118号）同时废止。 |